##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935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약칭: 조례)」의 제정 사유는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부존재하여 학교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됨.

※ 최초 조례명: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2003년 제정)

- 나. 최근 교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전(全)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제정 및 시행[2019.12.3. 제정 (시행알 2020.12.4)]
- 다. 학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구체화 및 강화된 교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4]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 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 라. 기 타

- 0 조례 기준 교육시설법 비교 [별첨 1]
- o 입법예고(2021. 9. 1. ~ 9. 23.)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서울시보(2021.9. 6. ~ 9. 27.) 게재 결과: 별도의견 없음
- 0 부패영향평가: 폐지안으로 해당없음 (담당자 협의 완료)
- 0 성별영향평가: 폐지안으로 해당없음 (담당자 협의 완료)
- o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3]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조례 기준 교육시설법 비교 검토

조례(기준)	교육시설법 및 법 관련 지침	검토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교내의 안전을 도모함	제1조(목적)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 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유사 및 구체화]		
제2조(정의) 1. 시설물, 2. 안전사고 3. 안전점검 4. 정밀안전진단 5. 안전교육, 6. 유지관리	제2조(정의) 1. 교육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 3. 교육시설의 장, 4. 감독기관 5. 교육시설안전사고, 6. 안전관리 7. 유지관리, 8. 안전점검, 9. 정밀안전진단	[유사 및 구체화]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b>각급 시립학교</b>	제2조(정의)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신설 및 강화]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적용범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당초 시립학교(공립학교) → 변경 · 공사립 유(제2조제1호가목) · 공사립 초·중·고·고등 기술·특수·각종학교 (제2조제1호나목) · 평생교육시설(제2조제1호라목) · 직속기관(제2조제1호바목)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신설 및 강화]		
제4조(학교시설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한 <b>시행계획을 수립·시행</b>	지원청에서 기본계획 수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립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교육장은 3년마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교육부 수립으로 변경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계획,		
	수립・시행	학교에서 실행계획 수립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주체변경]		
제5조(안전기준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교육감이 세부안전기준		
설정과 고시) 교육감은	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	설정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시설물의 세부안전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 · 유지관리기준 등)	교육부에서 최소환경기준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및 안전·유지관리 기준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마련	마런 시행으로 변경		
제6조(학교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b>교육감</b> 은 다음 시항을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주체변경]		
   심의 위하여 <b>학교시설물</b>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위원회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b>교육부장관 소속으로</b>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심의를		
   설치·운영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둔다.	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1. 시설물 안전 및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들어진 학교시설물안전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는 교육부에서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기본계획을 수립으로 변경		
2. 안전교육프로그램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		
운영에 관한 사항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3. 그 밖에 시설물		수립으로 변경)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 구성관련 내용		[주체변경]		
③ 위원회 심의 사항	_	[주체변경]		

제7조(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 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 전점검을 실시	[유사 및 구체화] 안전점검에 관한 주기· 방법·조치방법·공개방법이 법 및 지침 내용에 포함 하고 있음
② 학교장은 분기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공개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유사 및 구체화]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 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3. 교육시설의 장과 계약된 위탁 업체 에 소속된 직원 또는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민간 전문가	[유사 및 구체화]
④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정기점검 실시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공개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	[유사 및 구체화]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안전점검결과 재해 및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b>교육시설의 장은</b>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사 및 구체화]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법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제9조(학교시설물의 안전조치)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등의 조치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명할 수 있다. 1.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2. 대체시설의 확보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5. 교육시설의 철거	[유사 및 구체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 한·금지·철거 등에 대 한 내용이 법 내용에 포 함하고 있음
제10조(학교시설물의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유사 및 구체화]
유지관리) 학교장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법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유사 및 구체화]			
제11조(안전사고 예방을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한 교육) ① 교육감은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	교육은 법 및 「서울특별			
학교에서의 각종 안전	관리에 관한 <b>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b>	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례」에 포함하고 있음			
매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b>마련</b> 하여 시행 					
② 학교장은 적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_	기본조례]			
안전교육을 실시		제7조(책무)① <b>교육감은</b>			
③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안전의 강화 및 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_	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학부모 교육을 실시		수립·시행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b>예방 교육과 필요한</b>			
④ <b>학교장은</b> 학년도가		조치를 실시			
종료된 후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성과	_	제11조(안전교육의 실시)			
여부 등을 종합한	_	① <b>교육기관의 장은</b> 교육			
보고서를 작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r A . 1 - 1 - 2 - 2 - 2 - 2 - 2			
① <b>학교장은</b> 시설물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유사 및 구체화]			
안전과 개선을 위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까지	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지정상의 조치를 강구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법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보고				

② 교육감은 시설물	영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안전과 개선사업에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b>행정적</b>	[유사 및 구체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재정적 지원			
제13조(수당・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각종 위원회는 당해 연도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_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범위에서 수당 · 여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및 그 밖에 필요한		하여 지급하고있음.		
경비 지급				
제14조(시행규칙)		그레이 네스시 그이지서		
이 조례의 시행에	_	조례의 내용이 교육시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del>-</del>	법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있으므로 교육규칙 불필요함.		

#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기존 조례 폐지안으로 비용 미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최근 교육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약칭: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미첨부함.

####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개발팀 성동훈 주무관(02-399-9654)

#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립학	교 시설물	안전 및 위	우지관리에 관합	한 조례 피	ᅨ지조례안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담당자	직급		성명	성동훈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고태훈, 곽민재, 권정우, 김희진, 노기획홍보소위원회 정진권				희창, 송지은,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_	상위의 근거법(약칭 라, 기존의 상위법 조)를 폐지하고 보다 하여 업무를 추진하 - 학생인권 영향평가 의 안전은 학생인권 위한 자치법규는 필 전사고의 예방 외에 해 규정하고 있으므 평등한 교육시설을 용할 수 있는 더욱	<ul> <li>본 폐지조례안은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의 근거법(약칭 '교육시설법', 총54조)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상위법 위임없이 제정 시행되었던 조례(총 14조)를 폐지하고 보다 구체화 및 강화된 교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임.</li> <li>학생인권 영향평가 결과 수정의견은 없음. 다만 교육시설의 안전은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위한 자치법규는 필요하다 생각됨. 특히 교육시설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외에도 교육시설의 조성과 디자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내 교육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사항과 교육청의 책무를 기존 조례안에 새롭게 담을 수는 없었는지, 향후 고려가 필</li> </ul>			명에 따 (총 14 에 근거 육시설 로 이를 법은 안 등에 대 생에게 설에 적 무를 기	원안동의

## 관련법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글자색 범례]

유사 및 구체화 / 주체 변경 / 신설 및 강화 / 신규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 · 점검에 관한 사항
- 6. 교육시설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 ·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 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기준,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휴게·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평가·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 3. 교육시설의 설계 ·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 4.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한다)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⑥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상태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안전점검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 2. 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결함에 대한 보수 · 보강
  - 2. 대체시설의 확보
  -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 5. 교육시설의 철거
  - 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등급 변경 사실을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 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실행계획
  -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 4. 교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 알려야 한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